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87호 2022. 1. 19.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4차).....1
- 정선군 고시 제2022-2호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2-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7
- 정선군 고시 제2022-10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8
- 정선군 고시 제2022-1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10
- 정선군 고시 제2022-12호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11
- 정선군 고시 제2022-13호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12

- 정선군 고시 제2022-14호 2022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 고시.....18
- 정선군 고시 제2022-19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20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아리랑 전시관) 공사 완료
공고.....21
- 정선군 공고 제2022-39호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22
- 정선군 공고 제2022-52호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24
- 정선군 공고 제2022-70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30
- 정선군 공고 제2022-71호 개인택시 양도 · 양수신청 공고.....36
- 정선군 공고 제2022-73호 개인택시 양도 · 양수신청 공고.....3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4차)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정선(여량) 군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기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군계획시설(하수도) 사업

나. 명 칭 :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시설명	면적	금회시행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4,563㎡	□ 사업부지면적 : 4,417㎡ 오수처리시설(기계, 전기) 증축 : A=158.10㎡ 오수처리시설(휴게실) 증축 : A=127.10㎡ 약품실동 증축 : A=24.73㎡	

4.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당초 : 2021. 12. 31 → 변경 2022.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여량면 여량리	667	잡	4,602.7	4,417		정선군	-	-	-
계		1필지		4,602.7	4,417					

정선군 고시 제2022-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7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기 조성된 종합운동장 내 골프연습장 조성을 통해 골프 종목의 저변 확대 등 지역내 부족한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다. 규 모 : 운동장 A=177,698.4m²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http://www.eum.go.kr>)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변경없음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운동장	종합운동장	애산리 768일원	177,698.4	-	177,698.4	강원도고시 제2008-218호 ('08.8.8)	-

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77,698.4	-	177,698.4	100.0	
운 동 시 설	-	77,995.0	-	77,995.0	44.0	
주 경 기 장	1-1	30,570.0	-	30,570.0	17.2	
보조 경기장	1-2	15,590.0	-	15,590.0	8.8	
실내체육관	1-3	5,320.0	-	5,320.0	3.0	
궁도장	1-4	5,990.0	-	5,990.0	3.4	
테 니 스 장	1-5	7,117.0	-	7,117.0	4.0	
농구장	1-6	3,410.0	-	3,410.0	1.9	
실내야구연습장	1-7	1,185.0	-	1,185.0	0.7	
태권도연습장	1-8	1,019.0	-	1,019.0	0.6	
골프연습장	1-9	7,794.0	-	7,794.0	4.4	
편 익 시 설	-	17,270.0	-	17,270.0	9.7	
주차장①	2-1	9,810.0	-	9,810.0	5.5	
주차장②	2-2	6,940.0	-	6,940.0	3.9	
주차장③	2-3	520.0	-	520.0	0.3	
광장 및 조경시설	-	66,933.4	-	66,933.4	37.6	
광장①	3-1	1,960.0	-	1,960.0	1.1	
광장②	3-2	2,370.0	-	2,370.0	1.3	
광장③	3-3	5,230.0	-	5,230.0	2.9	
녹지 및 기타	3-4	57,373.4	-	57,373.4	32.3	
교 통 시 설	-	15,500.0	-	15,500.0	8.7	
도 로	4	15,500.0	-	15,500.0	8.7	

2)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698.4	-	177,698.4	16,697.20	증)1,080.90	17,778.10	26,277.85	증)62.83	26,340.68	
운 동 시 설	소 계		77,995.0	-	77,995.0	16,647.50	증)1,080.90	17,728.40	26,210.61	증)62.83	26,273.44	
	1-1	주경기장	30,570.0	-	30,570.0	8,810.97	-	8,810.97	13,494.42	-	13,494.42	
	1-2	보조 경기장	15,590.0	-	15,590.0	607.50	-	607.50	721.82	-	721.82	
	1-3	실내 체육관	5,320.0	-	5,320.0	4,910.26	-	4,910.26	8,003.33	-	8,003.33	
	1-4	궁도장	5,990.0	-	5,990.0	402.55	-	402.55	476.26	감)22.20	454.06	금회 변경
	1-5	테니스장	7,117.0	-	7,117.0	499.77	-	499.77	987.38	-	987.38	
	1-6	농구장	3,410.0	-	3,410.0	102.06	-	102.06	102.06	-	102.06	
	1-7	실내야구 연습장	1,185.0	-	1,185.0	299.20	-	299.20	299.20	-	299.20	
	1-8	태권도 연습장	1,019.0	-	1,019.0	378.00	-	378.00	378.00	-	378.00	
	1-9	골프 연습장	7,794.0	-	7,794.0	637.19	증)1,080.90	1,718.09	1,748.14	증)85.03	1,833.17	금회 변경
편의 시 설	소 계		17,270.0	-	17,270.0	-	-	-	-	-	-	
	2-1	주차장①	9,810.0	-	9,810	-	-	-	-	-	-	
	2-2	주차장②	6,940.0	-	6,940.0	-	-	-	-	-	-	
	2-3	주차장③	520.0	-	520.0	-	-	-	-	-	-	
광장 및 조경 시 설	소 계		66,933.4	-	66,933.4	49.70	-	49.70	67.24	-	67.24	
	3-1	광장①	1,960.0	-	1,960.0	-	-	-	-	-	-	
	3-2	광장②	2,370.0	-	2,370.0	-	-	-	-	-	-	
	3-3	광장③	5,230.0	-	5,230.0	-	-	-	-	-	-	
	3-4	녹지 및 기타	57,373.4	-	57,373.4	49.70	-	49.70	67.24	-	67.24	
교통 시 설	소 계		15,500.0	-	15,500.0	-	-	-	-	-	-	
	4	도로	15,500.0	-	15,500.0	-	-	-	-	-	-	

■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궁도장	○ 변경 - 부지면적 : 5,990.0㎡ (변경없음) - 건축면적 : 402.55㎡ (변경없음) - 건축연면적 : 476.26㎡ → 454.06㎡ (감)22.20㎡	○ 궁도장 연면적 기재 오류 정정 (건축물 대장상 최종 연면적 반영)
1-9	골프 연습장	○ 변경 - 부지면적 : 7,794.0㎡ (변경없음) - 건축면적 : 637.19㎡ → 1,718.09㎡ (증)1,080.90㎡ - 건축연면적 : 1,748.14㎡ → 1,833.17㎡ (증)85.03㎡	○ 골프연습장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정선군 고시 제2022-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정선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비 고
계	주 민 등 록	조 례 외국인			
31,891	31,857	34	27	31,864	

☞ 주민투표 청구 서명 주민 수 : 3,187명 이상

※ 청구권자 총수의 1/10이상 서명

정선군 고시 제2022-10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22년도 정선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 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시군명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자(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A-B)	비 고
	계	주민 등록	3년경과등록 외국인			
정선군	31,889	31,857	32	27	31,862	

※ 2021. 12. 31. 기준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정선군수

(단위 : 명)

선거구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정선군수	31,862	4,784	총 서명인수
정 선 읍	8,998	1,350	읍면 최소 서명인수
고 한 읍	3,895	585	"
사 북 읍	4,087	614	"
신 동 읍	3,103	466	"
화 암 면	1,507	227	"
남 면	2,873	431	"
여 량 면	1,878	282	"
북 평 면	2,251	338	"
임 계 면	3,270	491	"

○ 정선군의회 의원

(단위 : 명)

선거구명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가 선거구	소 계	17,904	3,583	총 서명인수
	정선읍	8,998	1,800	읍면 최소 서명인수
	화암면	1,507	302	"
	여량면	1,878	376	"
	북평면	2,251	451	"
	임계면	3,270	654	"
나 선거구	소 계	13,958	2,793	총 서명인수
	고한읍	3,895	779	읍면 최소 서명인수
	사북읍	4,087	818	"
	신동읍	3,103	621	"
	남 면	2,873	575	"

정선군 고시 제2022-1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정선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비 고
계	주민등록	3년경과 등록외국인			
31,889	31,857	32	27	31,862	

☞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 : 911명 이상

※ 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1/35이상

정선군 고시 제2022-12호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정선군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단위 : 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비 고
계	주민등록	3년경과 등록외국인			
32,116	32,084	32	27	32,089	

☞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 : 1,605명 이상

※ 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1/20이상

정선군 고시 제2022-13호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한시적 곤돌라 활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운영근거 마련

나.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42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31,193.2	-	1,831,193.2	100.00	-
관 리 지 역	소 계	1,831,193.2	-	1,831,193.2	100.00	
	계 획 관 리 지 역	1,831,193.2	-	1,831,193.2	10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①	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59번지 일원	1,831,193.2	-	1,831,193.2	-

다) 지구단위계획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①	체육 시설	스키장	북평면 숙암리 659번지 일원	1,646,219.2	-	1,646,219.2	강원도고시 제2014-173호 (2014.5.2)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가 구		비고		
				위 치	면적(m²)			
합 계				-	1,831,193.2			
합계	대회관련 시설지구	체육시설용지		-	1,646,219.2	한시적 존치		
	관광 휴양 지구	계		-	184,974.0			
		관광휴양시설용지		-	29,284.0			
		공공시설용지		-	116,665.0			
		녹지용지		-	24,495.8			
		원형존치		-	14,529.2			
A	대회 관련 시설 지구	소 계		-	1,646,219.2			
	A1	체육시설용지	북평면 숙암리 659채 일원		1,646,219.2	한시적 존치		
B	관광 휴양 지구	소 계		-	184,974.0 (78,311)			
		B1	관광휴양시설용지	북평면 숙암리 652대 일원		29,284.0		
		B2	공공시설용지	-		116,665.0 (78,311)		
				휴양시설	북평면 숙암리 651공 일원		27,678.6	
				편의시설	북평면 숙암리 643차 일원		46,842.0	
				편의시설 2 (관광곤돌라)	475-3전 일원		(78,311)	체육시설 용지내
				관리시설	북평면 숙암리 658잡 일원		4,320.0	
				도로	-		37,824.4	
		B3	녹지용지	-		24,495.8		
		B4	원형존치	-		14,529.2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획지번호		획지내역		비고
			위 치	면적 (㎡)	
A	대회관련시설지구			1,646,219.2	
	A1 체육시설용지		북평면 숙암리 659채 일원	1,646,219.2	한시적 존치
B	관광휴양지구		-	184,974.0	
	B1 관광휴양시설용지		-	29,284.0	
	B1-1	숙박시설1	북평면 숙암리 653대 일원	11,547.0	
	B1-2	숙박시설2	북평면 숙암리 652대 일원	17,737.0	
	B2 공공시설용지		-	116,665.0 (78,311)	
	B2-1	진입광장	북평면 숙암리 651공 일원	13,442.6	휴양 시설
	B2-2	중앙광장	북평면 숙암리 651공 일원	11,600.0	
	B2-3	휴게광장	북평면 숙암리 647채 일원	2,636.0	
	B2-4	주차장1	북평면 숙암리 643차 일원	20,202.0	편의 시설
	B2-5	주차장2	북평면 숙암리 648차 일원	18,466.0	
	B2-7	대회운영시설부지	북평면 숙암리 657채 일원	8,174.0	
	B2-12	곤돌라 하부 관리사무소	북평면 숙암리 475-3 일원	(6,504)	편의 시설 (체육 시설 용지내)
	B2-13	곤돌라	북평면 숙암리 산400-42 일원	(40,009)	
	B2-14	관리운영통로	북평면 숙암리 산400-42 일원	(31,798)	
	B2-8	헬리포트	북평면 숙암리 648차 일원	760.0	관리 시설
	B2-9	오수처리장	북평면 숙암리 658잡 일원	2,220.0	
	B2-11	주변전실	북평면 숙암리 657채 일원	1,340.0	
	B2-10	진입도로	-	37,824.4	도로
	B3 녹지용지		-	24,495.8	녹지
	B3-1	시설녹지	-	24,495.8	
	B4 원형존치		-	14,529.2	원형
	B4-1	원형존치	-	14,529.2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B 관광휴양지구	-	-	
		B1 관광휴양시설용지	-	-	
기정	B1-1	북평면 숙암리 653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80.0m)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평지붕 형태	
			색채	· 정선군기본계획상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북부권 색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기정	B1-2	북평면 숙암리 652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80.0m)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평지붕 형태	
			색채	· 정선군기본계획상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북부권 색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B2 공공시설용지			-	-	
신설	B2-12	475-3전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관리사무소 및 근생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20.0m)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평지붕 형태	
			색 채	· 정선군기본계획상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복부권 색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신설	B2-13	산400-42임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곤돌라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20.0m)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평지붕 형태	
			색 채	· 정선군기본계획상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복부권 색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라. 정선 군관리계획(숙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군 고시 제2022-14호

2022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1. 입산통제기간

- 봄 철 : 2022. 02. 01 ~ 2022. 05. 15.
- 가을철 : 2022. 11. 01 ~ 2022. 12. 15.

※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통제구역 지정목적 : 산불예방,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376필 12,768ha

나. 등 산 로 : 49개구간 168.5km(개방 49.8km, 폐쇄 118.7km)

4.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마.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1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22-19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정 선 군 수

일반명단 작성비용	라벨용 명단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광학식디스크(CD)
A4 용지(매당) 58원/매	A4 라벨용지 198원/매	(3,000원×CD개수) + (기타비용 23원×매수)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아리랑 전시관)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03-62호(2003. 06. 19)로 최초 결정 되고 정선군 고시 제2021-171호(2021. 12. 2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아리랑 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8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 사업

나. 명 칭: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아리랑 전시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금회시행)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금회 시행	
공간시설	유원지	83,446m ²	□ 아리랑 전시관 : A=1,839m ² - 연면적 : A=587m ²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일: 2021. 08. 02

정선군 공고 제2022-39호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나. 위치 및 사업규모

위치		선로길이	철탑	송전선로 통과 행정구역	비고
시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1리(철탑NO.156)	·지상선로 : 약14.07km ·지중화 : 약 4.00km ·총연장 : 약 18.07km	·철탑 : 26기 ·Cable head 철탑 : 2기	·강원도 정선군	
종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철탑NO.184)				

주) 철탑 No.156은 동부-4구간에 포함하고, 동부-5구간은 철탑No.156 이후의 선로부터 포함하여 평가함

다.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2. 01. 11. ~ 2022. 02. 17. (25일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군청,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남면행정복지센터, 신동읍행정복지센터, 평창군청, 미탄면사무소

※ 전자공람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평창군 홈페이지(www.pc.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종료후 7일까지
- 나. 제출장소 : 정선군 환경과, 평창군 환경위생과 및 각 공람장소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양식에 의견 기재하여 서면 제출
- 라. 제출내용 : 당해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

4. 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 2022년 01월 18일(화) 오후 2:00(정선군 정선읍행정복지센터)
- 2022년 01월 19일(수) 오후 2:00(평창군 미탄면사무소)

나. 참석대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 ※ 본 설명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석자는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개최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외여행 경력이 있거나, 호흡기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 ※ 방역지침 준수로 설명회 장소별로 참석인원 제한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설명회 추가 실시, 현장안내예정)
-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개최방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 공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및 평창군 홈페이지(www.pc.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를 동시 진행합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환경과(033-560-2910), 평창군 환경위생과(033-330-2331),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02-2096-4692)로 문의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2-52호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조항 신설에 따른 조례 제정 필요
- 나.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하고 그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를 규정 함
- 나.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안 제4조)을 규정 함
- 다.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안 제5조)를 규정 함
-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안 제6조)를 규정 함
-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안 제7조)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시설국 안전과
- ▶ 전 화: 033 - 560 - 2361
- ▶ 팩 스: 033 - 560 - 2174
- ▶ 이메일: wanning7@korea.kr

- 붙임 1.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참석수당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일비는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정선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79호, 2020. 08. 18, 일부개정]

강원도(재난예방과) 033-249-4055

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정선군 공고 제2022-70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2021년 강원도종합감사 시 지적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운영 소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2 제1항 각 제1호~제4호 외의 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하고 제5호 신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2. 1. 17. ~ 2022. 2. 5.(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02), 팩스(033-560-2272)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1항 각 제1호~제4호 외의 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무상 대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현행과 같음)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무상 대부(신설)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 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중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 동)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선군 공고 제2022-71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희망자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22. 1. 17. ~ 1. 31. (15일간)
2. 장 소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3. 양도대상 차량
 - 소 유 자 : 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 차량번호 : 강원51바1111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임.
 -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1) 운전경력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동안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동안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 , 나) 운전경력 합산자

-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단,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 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 관내에서 2년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나. 운전경력이 위 가항에 해당신청자가 없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양수자 등의 기본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함.

5. 접수 제외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가용운전 경력의 경우 채용관련 증빙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원부, 기타 운전경력 입증서류)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서 1부.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1부.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033-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033-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2-73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희망자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정 선 군 수

1. 접수기간 : 2022. 1. 17. ~ 1. 31. (15일간)
2. 장 소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3. 양도대상 차량
 - 소 유 자 : 정**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
 - 차량번호 : 강원51바1107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임.
 -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1) 운전경력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동안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동안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 , 나) 운전경력 합산자

-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단,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 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 관내에서 2년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나. 운전경력이 위 가항에 해당신청자가 없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양수자 등의 기본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함.

5. 접수 제외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가용운전 경력의 경우 채용관련 증빙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원부, 기타 운전경력 입증서류)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서 1부.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1부.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033-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033-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